

보도자료

(농림부)

- 제공일 : 2007. 2. 21.
- 제공자 : 농림부 경영인력과
- 과 장 : 김 정 희
- 사무관 : 김 휴 현
- 전 화 : 500-1684

이 자료는 2007년 2월 22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농림부, 농업경영체에 마케팅 등 전문인력 지원
- '07년 시범사업 추진, 총 20개 업체에 월 120만원 지급

- 농림부는 올해부터 발전가능성이 있는 우수 농업경영체가 마케팅·경영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활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이는 최근 농업경영이 규모화되고 다각화됨에 따라 마케팅, 경영회계 등 전문가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험많은 전문인력의 농업분야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 지원대상 경영체는 올해 총 20개 경영체로 3개년 사업실적, 계약재배 등 농업인과의 상생적 경영체계 구축 여부 및 경영주의 경영능력·인적자원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 신청자격은 3개년 평균 매출액 30억원이상 70억원 이하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상 공동사업법인, 거점 APC, 농림부 경영평가 C등급이상 APC·RPC등이다.

- 지원대상 전문인력은 마케팅 및 상품기획, 경영·회계전문가로서 경력 3년이상 유경험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갖춘 자이다.
-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전문인력 1인에 한하여 월120만원씩 1년간 보조금(총1,440만원)을 지원받는다.
- 농림부는 3월 6일까지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 모집공모 후 3월중 심사·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개소수의 1.5배에 상응하는 총 30 개소를 1차로 선정할 계획이다 .
 -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선정 과정 : 신청·접수 → 계량평가(60개 업체 선정) → 전문평가기관 현지실사(45개 업체 선정) → 선정 심사위원회(30개 업체)
- 1차로 선정된 농업경영체 중 3개월이내에 전문인력을 먼저 고용한 순서대로 20개 업체가 최종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고 장려금을 분기별로 지급받게 된다.
 - * 보조금 지급 절차 : 지원대상경영체에서 전문인력에게 임금 지급 → 분기 익월말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 → 고용유지사실 확인 → 보조금 지급
- 동 사업의 신청 접수 등 행정지원 업무는 한국농업전문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며, 자세한 사항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와 한국농업전문학교 홈페이지(www.kn.ac.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 농림부관계자는 “전문인력 고용을 통해 경영주의 경영능력과 마케팅 능력 등을 보완하여 농업경영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림부 공고 2007 -35호

2007년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2. 16.

농림부장관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 선정·지원계획

1. 사업목적

- 농업경영체에 기업경영마인드를 고취하고, 브랜드, 마케팅 등 농업외부 선진 경영기법도입 등을 통한 경영혁신 유도
-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농업법인·브랜드경영체 등의 경영선진화를 위해 상품기획·마케팅·경영·회계 등 전문인력 활용지원

2. 지원 사업의 내용

- 총 지원예산 : **288백만원**(농림부 농업구조개선특별회계 예산)
 - 지원업체 수 : 20개업체
 - 지원금액 : 전문인력 고용시 월 120만원 지원 (연간 1,440만원)
 - 업체별로 지원하는 전문인력은 1명에 한함

□ 지원 신청자격

- ① 3개년 평균 매출액 30억원이상 70억원 이하 농업법인 ② 농협법상 공동사업법인 ③ 농림부 선정 공동마케팅조직 및 FTA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거점 APC ④ '06 농림부 평가 결과 C등급 이상 민간 APC ⑤ '06년 농림부 경영평가 C등급 이상 민간 RPC (3개년 평균 매출액 150억원 이하)
- 공통 필수 사항 : ①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법인, ②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3년간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공동마케팅조직 및 거점 APC 제외)
- 선정제외 : 농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 전문인력의 범위

- **경영기획 담당자** :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력개발, 경리·재무·마케팅, 물류 등 경영 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상품·기술 개발자**
 - ① 상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②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 ③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 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 ②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 ③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 ④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관리사
- 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 ⑥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인력 고용의 조건

- 고용형태 : 전일제 근무제의 정규직으로 고용
- 4대 보험료 등은 업체 자부담
- 고용기간 : 24개월 이상 의무고용

3.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선정절차 및 방법

□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7. 2. 22(목) ~ 3. 6(화)
- 접수처 : 한국농업전문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1-1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최종일 우편소인이 있는 경우 유효
- 신청서류 : 붙임<1호, 4호 서식>
 - 농림부홈페이지(www.maf.go.kr)와 한국농업전문학교 홈페이지(www.kn.ac.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 사업추진체계 >

①신청·접수(경영체→ 한국농업전문학교), ②계량평가, 현지실사, 최종심사(한국농업전문학교, 선정위원회), ③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농림부 → 경영체) ④전문인력 고용 및 고용사실통보(경영체 → 한국농업전문학교) ⑤지원대상자 확정 통지(농림부 → 경영체) ⑥임금 지급 및 분기별 자금신청(경영체 → 한국농업전문학교) ⑦사실 확인 및 자금지급(한국농업전문학교 → 경영체)

- 지원 희망 업체가 한국농업전문학교 산학협력단에 신청(1호, 4호 서식)
- 1차 계량평가(선정심사위원회) : 지원 신청업체에 대해 계량평가를 기준으로 30개 업체(지원대상 20개 업체의 1.5배수)의 2배수인 60개 업체를 현지실사대상으로 선정
- 2차 현지실사(한국농업전문학교 산학협력단) : 60개 업체에 대해 현지 실사를 통해 계량평가 계수의 사실 여부 확인 및 비계량부문에 대한 평가 실시(계량 60%, 비계량 40%)
- 3차 최종심사(선정심사위원회) :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45개 업체(30개 업체의 1.5배수)를 선정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30개 업체 심사 확정
- 30개 업체에 대해 선정사실 통보

- 30개 업체는 전문인력 채용 즉시 한국농업전문학교 산학협력단에 고용사실 통보(3호 서식)
 - 전문인력 구인 기간 : 잠정 지원대상자 통보일 기준 **3개월 (90일) 이내**
 - 30개 업체 중 전문인력고용통보서 접수 선착순 20개 업체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확정
- 최종 지원 대상 업체는 전문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분기 단위로 한국농업전문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금 신청(2호서식)
- 한국농업전문학교 산학협력단은 사실 확인 후 자금지급

4. 향후 추진일정(안)

- '07. 2. ~ 3. 6 : 신청서 접수
- '07. 3. 7~ 3. 14 : 신청서 검토 및 현지실사
- '07. 3. 19 : 선정위원회 개최
- '07. 3. 22 : 지원대상자 발표
- '07. 3. 22 이후 : 전문인력 고용 및 자금 지원

1. 경영체 개요

자산(백만원)			자 본			부 채											
매 출 액 (백만원)			'03			'04			'05			'03~'05 평균			'06추정		
상시 고용인원																	
합 계 (명)				사 무 (명)				기 술 (명)				기 능 (명)					
성명	주민등록 번호	담당 업무	성명	주민등록 번호	담당 업무	성명	주민등록 번호	담당 업무	성명	주민등록 번호	담당 업무	성명	주민등록 번호	담당 업무			
경영체 연혁																	
연월	연 혁																

- 수출실적증명 첨부
- 특허·실용신안등록증, 출원증명서(출원의 경우),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기업 인증서, 유망중소기업 확인서, 수출중소기업 확인서, 각종 인증서(ISO, 우수농산물 인증 등) 사본 첨부

2. 대표자 개요

성 명		주민등록번호	(만 세)		
주요경력	기 간	근무처	업 종	담당업무	최종직위
대표자 수상실적	수상 명	수상기관		일 자	비고

3. 경영체 인적자원

교육실적	(최근 2년간 임직원의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기입)		
교육명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복리후생제도	(경영체에서 운영중인 복리후생시설 및 복리후생제도가 있는 경우 기입)		

4. 신청동기 및 기대효과

신청 동기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경영개선계획 중심으로 기입)
기대 효과	(전문인력 활용에 따른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기입)

5. 경영개선계획

목 표	(전문인력 고용후에 달성할 기술 수준, 품질 수준, 매출액, 수익 금액 등의 목표를 기재)
중점 추진 방향	(전문인력 활용으로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방안 등을 기재)
전문인력 활용계획	(전문인력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추정 손익 계산서

(단위 : 백만원)

연도 항목	실 적			추 정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 이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연구 개발비)	()	()	()	()	()	()	()
영업 이익							
영업 외 수익 영업 외 비용							
경상 이익							
특별 이익 특별 손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법인세 등							
당기 순 이익							

<제4호 서식>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고용기간 이행 약속서

본인은 '07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활용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 받은 자금으로 채용한 직원을 채용일로부터 최소 2년간 고용할 것이며, 특별 사유없이 고용을 취소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직원 스스로 퇴직할 경우 제외)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농림부 장관 귀하

<특별사유>

- 합병, 사업의 양도, 휴업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매출격감, 자금부족 등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에서 정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